
제 55 차 임 시 이 사 회

2018. 11. 12.

서울디자인재단

제55차 임시이사회 개요

○ 일 시 : 2018년 11월 12일(월), 16:30

○ 장 소 : DDP배움터 4층 아너스라운지

○ 참석대상

- 임 원 : 이사장 1명, 대표이사 1명, 비상임이사 9명, 비상임감사 2명

- 배 석 : 재단 본부장, 서울시 디자인정책과, 공기업담당관, 도시공간개선단 단장 외

○ 상정안건 : 5건

1. (의안번호 제165호)정관 개정안

2. (의안번호 제166호)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

3. (의안번호 제167호)보수규정 개정안

4. (의안번호 제168호)복무규정 개정안

5. (의안번호 제169호)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

○ 보고안건 : 3건

1. 비상임이사 사임 보고(박춘무 등)

2.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보고

3. 내규 개정 결과 보고(3건)

- 업무분장내규, 인사규정 시행내규, 비상용직 관리내규

○ 진행순서

순서	시간	내용	비고
1	16:30 ~17:30	이사회 개최선언 보고안건 보고	이사장 진행
2		상정안건 보고 및 의결	이사장 진행
3		폐회	이사장 진행

서울디자인재단 이사회 구성 임원 명단(2018.11.12.기준)

■ 임 원 : 13명 (이사 11, 감사 2)

직 위	성 명	생 년	임 기	현직 및 경력
이 사 장 (1)	 강 병 길	1954	'18.04.16~ '21.04.15	· 現 숙명여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· 前 서울생활용품회사 총감독 · 前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예술감독
대표이사 (1)	 최 경 란	1962	'18.04.16 '21.04.15	· 前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장 · 前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(2015) · 前 서울디자인한마당 총감독
비상임 이 사 (6)	 김 경 선	1971	'18.04.16 '21.04.15	· 現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부교수 · 前 홍디자인 디자인실 이사 · 前 제일기획 프로모션사업팀
	 이 충 기	1961	'17.05.12 ~ '20.05.11	· 現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· 前 한메건축사사무소 대표
	 좌 세 준	1965	'17.05.12 ~ '20.05.11	· 現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· 前 한양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
	 김 승 언	1979	'17.05.12 ~ '20.05.11	· 現 네이버 디자인센터장 · 前 프리첼(주)디자이너 · 前 NHN엔터테인먼트 이사
	 방 은 진	1965	'17.05.12 ~ '20.05.11	· 現 모베터필름 대표 · 前 서울예술대 영화과 겸임교수 · 前 성신여대 영상연기 교수
	 한 문 철	1958	'17.05.12 ~ '20.05.11	· 現 라이나전선기재단 이사 · 前 서울시 문화디자인본부장(2급) · 前 시의회사무처장(1급)
비상임 이 사 (근로자이사 1)	 정 승 언	1980	'17.05.12 ~ '20.05.11	· 現 서울디자인재단 선임 · 前 (주)건국휴먼 사원 · 前 (주)카사이나 사원
비상임 이 사 (당연직 2)	 서 정 협	1965	'17.07.01 ~ 재임 시	· 現 서울시 문화본부장 · 前 시민소통기획관
	 마 채 속	1971	'18.07.20 ~ 재임 시	· 現 서울시 재정기획관 · 前 사회혁신담당관 · 前 평가담당관
비상임 감 사 (당연직 1)	 김 선 수	1965	'18.01.01 ~ 재임 시	· 現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 · 前 신성장산업과장
비상임 감 사 (1)	 신 종 범	1971	'18.04.16~ '21.04.15	· 現 법률사무소 누림 변호사 · 現 기천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· 前 법무법인 더림 변호사

목 차

제165호	정관 개정안	5
제166호	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	10
제167호	보수규정 개정안	13
제168호	복무규정 개정안	16
제169호	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	20
보고안건	1. 비상임이사 사임보고(박춘무 등) 2.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보고 3. 내규개정 결과보고(3건)	26

의안번호	제 165 호
의결연월일	2018. 11. 12

정관 개정안

제 안 자	정책기획팀
제안년월일	2018. 11. 12

1. 의결주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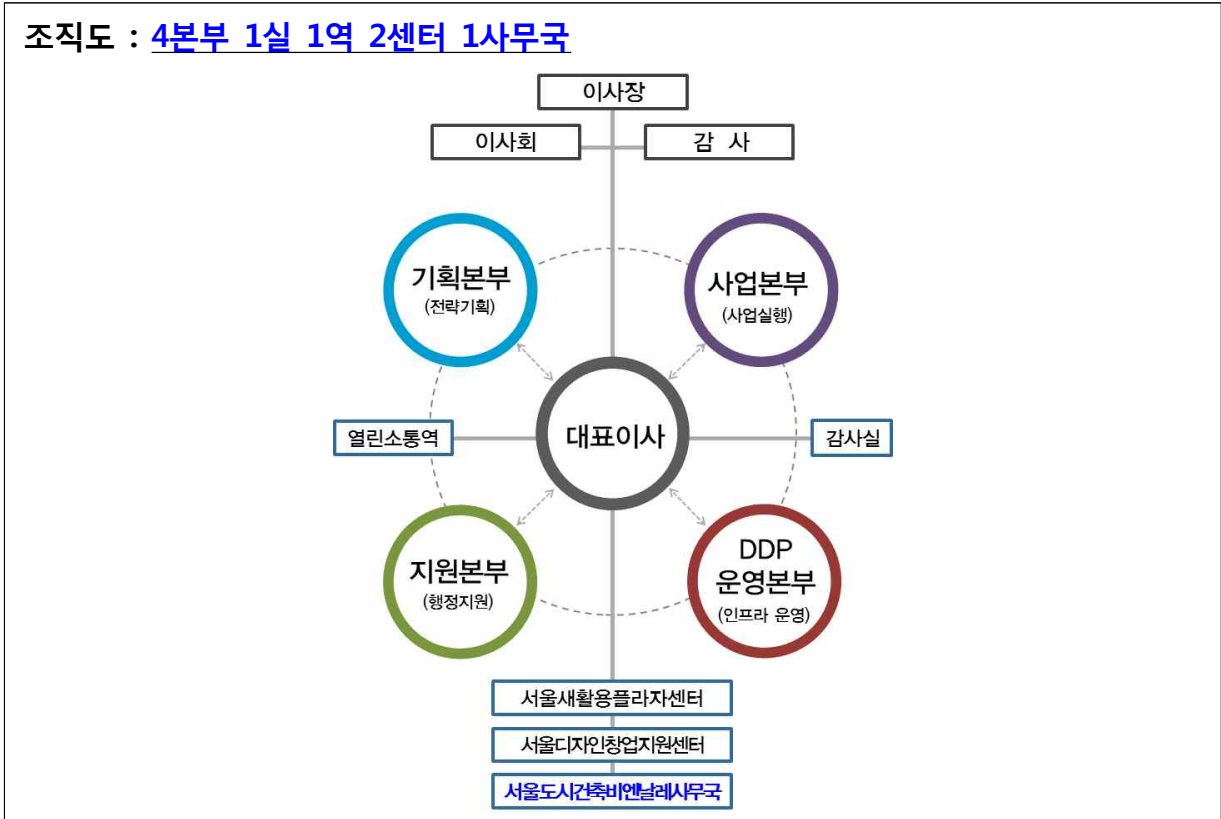
- 「정관」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2. 제안이유

- 『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』에 따라 『정관』 내 명기된 서울시 보직 명칭 개정
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 설치에 따른 조직도 변경
 - 근거 : 서울디자인재단 내 서울비엔날레 사무국 운영 협조요청 (도시공간개선단-9935, '18.8.16)

3. 주요골자

- 제14조(임원의 직무) ②항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에서 문화본부장으로 개정
- <별표1> 조직도 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신설



4. 참고사항
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절차 : 이사회 의결 후 시장승인
- 기타 : 개정안은 시장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

[별지1] 정관 개정안 1부.

[별지2]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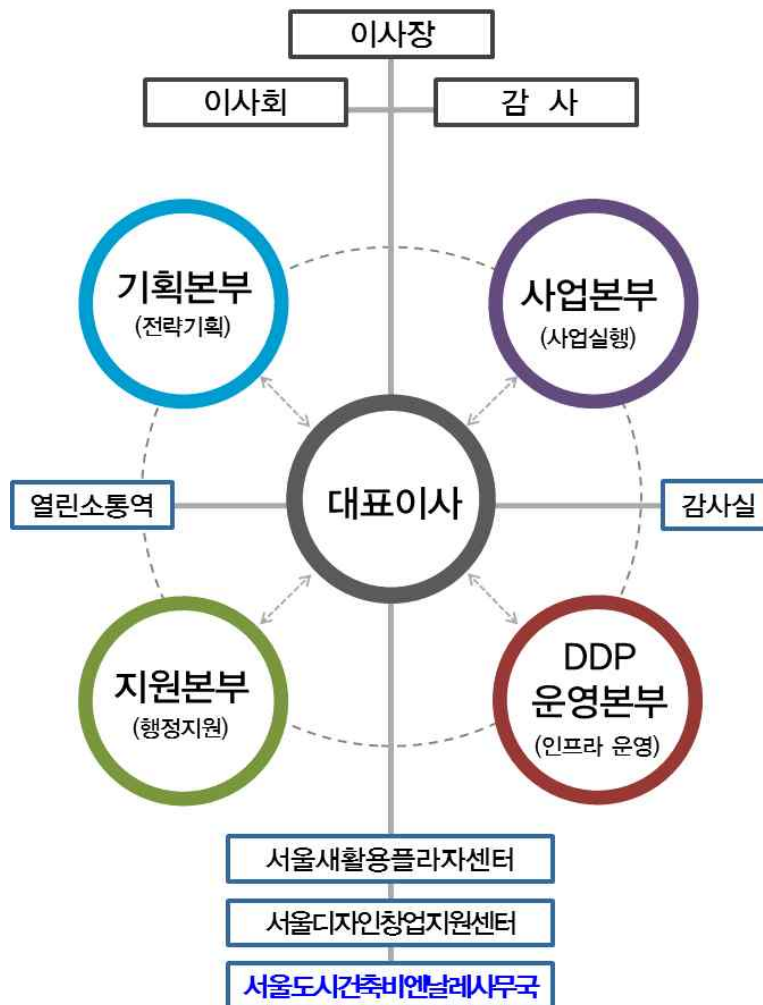
[별지1]

「정관」 개정안

「정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4조(임원의 직무)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**문화본부장**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<별표1> 조직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

조직도 : **4본부 1실 1역 2센터 1사무국**

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임원의 직무)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14조(임원의 직무)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문화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<p><별표1> 조직도 : 2단 5본부 1연구소 1감사팀 1사무국</p>	<p><별표1> 조직도 : 4본부 1실 1역 2센터 1사무국</p>

의안번호	제 166 호
의결연월일	2018. 11. 12

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

제 안 자	인재경영팀
제안년월일	2018. 11. 12

1. 의결주문

- 「직제 및 정원 규정」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2. 제안이유

- 직원의 정년 당해연도 1년 전부터 퇴직준비를 위한 장기연수 등에 참여하는 임금피크 적용대상자에 대한 정원운영 방법 규정화(제6조 정원)
 - 근거 :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제8조(보직) 2항
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직제 신설(제8조 조직의 편성 <별표2>)
 - 근거 : 서울비엔날레 사무국 구성 및 운영 협조요청(도시공간개선단-13309호, 2018.11.01.)

3. 주요골자

- **제6조(정원) 2항** : 직원의 정년 당해연도 1년 전부터 임금피크에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.
- **제8조(조직의 편성) 1항 3호 및 2항 9호** : 대표이사 직속기구 중 “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”을 신설하고, “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은 건축비엔날레 계획 수립 및 실행, 전시 및 세미나·포럼 개최 등을 한다.”의 업무내용을 신설함
- **제8조의 2(보직) 7호** :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직제 신설에 따라 일반직 1급 내지 3급, 전문직가급 등을 국장에 보할 수 있으며, 계약직 4급 직원을 직무대리에 보하도록 신설함.
 - * 7호를 신설하고 기존 7호는 8호로 함
- **<별표2> 조직도** : ‘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’ 대표이사 직할 직제를 신설함.

4. 참고 사항
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절 차 : 이사회 의결 후 시장승인
- 기 타 : 개정안은 시장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

「직제 및 정원규정」개정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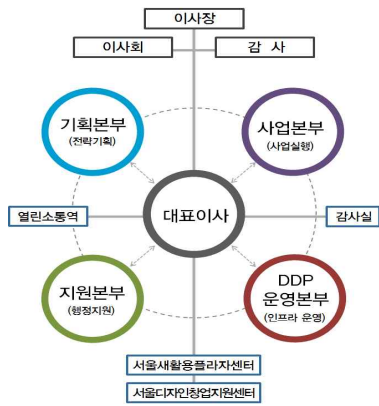
「직제 및 정원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7조(정원외 직원), 제8조(조직의 편성), 제8조 2(보직), <별표2> 조직도 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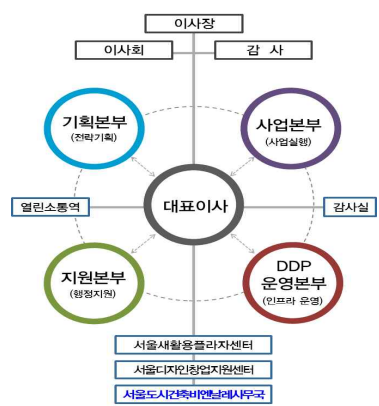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6 조(정원) 재단의 정원은 <별표 1>과 같으며, 재단에 파견중인 공무원은 재단의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.</p>	<p>제 6 조(정원) 재단의 정원은 <별표 1>과 같으며, 재단에 파견중인 공무원은 재단의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.</p>
<p><신설></p>	<p>② 직원의 정년 기준일 1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1.00></p>
<p>제 8 조(조직의 편성)</p> <p>① 재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(중략)</p> <p>3.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열린소통역, 감사실,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,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를 둔다.</p>	<p>제 8 조(조직의 편성)</p> <p>① 재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(중략)</p> <p>3.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열린소통역, 감사실,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,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,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을 둔다. <개정 2018.11.00></p>
<p>② 각 부서별 주요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. <신설></p>	<p>② 각 부서별 주요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.</p> <p>9.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은 건축비엔날레 계획 수립 및 실행, 전시 및 세미나포럼 개최 등을 한다.<개정 2018.11.00></p>
<p>제 8 조2 (조직의 편성) 재단 각 기구별 보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. <신설></p>	<p>제 8 조2 (보직) 재단 각 기구별 보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.</p> <p>7. 사무국은 국장을 두고, 일반직 1급 내지 3급, 전문직 가급,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한다. 또는 계약직 4급 직원을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.<개정 2018.11.00></p>
<p>7. 열린소통역은 재단 직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 자로 보한다.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</p>	<p>8. 열린소통역은 재단 직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 자로 보한다.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</p>

<별표2> 조직도 : 4본부 1실 1역 2센터



<별표2> 조직도 : 4본부 1실 1역 2센터 1사무국

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의안번호	제 167 호
의결연월일	2018. 11. 12

보수규정 개정안

제 안 자	인재경영팀
제안년월일	2018. 11. 12

1. 의결주문

- 「보수규정」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2. 제안이유

- 대표이사 직무대행 직책수당 지급기준 마련(제조 용어의정의 <별표2> 부가급여 지급기준표)
- 근거 : 출자·출연기관장 직무대행시 직책수행비 지급기준 통보
(공기업담당관-7524, 2018.06.26)

출자·출연기관장 직무대행시 직책수행비 지급기준 통보 내용			
□ 기관장 직무대행 직책수행비 지급기준			
구 분	지급기준	지급방법	비 고
당연직이사 직무대행	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	○ 1급기관장 직책급업무추진비 준용, 월액 750천원 직무대행자에게 지급 ○ 기관별 정관, 규정 등에 직무대행자 직책수행비 지급 근거 명시	서울산업진흥원, 세종문화회관, 서울여성가족재단, 서울복지재단 등 (14개 기관)
□ 관련 법률			
○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(겸임수당),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			
○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,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			

3. 주요골자

- 제4조(용어의 정의) 4호 :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직책수당을 신설하고 <별표2>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를 개정함.
- <별표2> 부가급여 기준표 : 대표이사 직무대행(당연직 이사: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)의 직책수당을 750,000원으로 신설하고 "단"의 직제 폐지에 따라 단장의 직책수당을 삭제함

4. 참고 사항
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절 차 : 이사회 의결 후 시장승인
- 기 타 : 개정안은 시장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

「보수규정」개정안

「보수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4조(용어의 정의), <별표2>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를 아래같이 개정함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제4조(용어의 정의) 4. “부가급여”라 함은 <별표 2>에 의한 휴일 근무수당, 시간외근무수당, 연차휴가수당, 가족수당, 학비보조수당, 직급수당을 말한다.			제4조(용어의 정의) 4. “부가급여”라 함은 <별표 2>에 의한 휴일 근무수당, 시간외근무수당, 연차휴가수당, 가족수당, 학비보조수당, 직책(대표이사 직무대행 포함) 또는 직급수당 을 말한다.<개정 2018.11.00>		
<별표2>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			<별표2>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		
구 분	지급률 또는 지급액	적 용 범 위	구 분	지급률 또는 지급액	적 용 범 위
직책 또는 직급수당	◦ 직책수당(매월) .대표이사 : 시장이 결정 .단 장 : 800,000원 .본부장 : 500,000원 .팀 장 : 500,000원	◦ 상근 임원과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	직책 또는 직급수당	◦ 직책수당(매월) .대표이사 : 시장이 결정 .대표이사 직무대행 : 750,000원 <신설 2018.11.00> .단 장 : 800,000원 <삭제 2018.11.00> .본부장 : 500,000원 .팀 장 : 500,000원	◦ 상근 임원과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 ◦ 당연직이사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대행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의안번호	제 168 호
의결연월일	2018. 11. 12

복무규정 개정안

제 안 자	인재경영팀
제안년월일	2018. 11. 12

1. 의결주문

- 「복무규정」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2. 제안이유

- 근무시간 및 휴가기간의 적용 기준 명확화

(제13조 근무시간, 15조 초과근무, 24조 휴가기간 중의 휴일)

- 근거 : 근로기준법 제2조(정의) 및 근로기준법 제70조(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) 등

근로기준법 제2조(정의)

-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(중략)
7. "1주"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.

근로기준법 제70조(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)

- ② 사용자는 임신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

-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 확대 (제26조 육아휴직)

- 근거 :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육아휴직의 적용제외)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(육아휴직의 적용제외)

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 5. 28.>

1.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(이하 "휴직개시예정일"이라 한다)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**6개월 미만인 근로자**
2.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(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)을 하고 있는 근로자

3. 주요골자

- 제13조(근무시간) 4항 :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"1주"의 정의를 "휴일을 포함한 7일"로 명확화 함.
- 제15조(초과근무시간) 3항 : 18세 미만자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규정을 신설함.
- 제26조(육아휴직) 1호 :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자의 조건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"1년 미만인 근로자"에서 "6개월 미만인 근로자"로 개정함.
- 제34조(휴가기간 중의 휴일) : 휴가일수 산정 시 재단이 정한 휴일(복무규정 제20조(휴일))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함.

재단 복무규정 제20조(휴일)

다음 각 호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.

1. 일요일
2.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
3. 재단법인 창립기념일
4. 근로자의 날(노동절)
5. 기타 정부 또는 재단에서 지정하는 날

4. 참고 사항
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절차 : 이사회 승인
- 시행일 :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

「복무규정」개정안

「복무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3조(근무시간), 제15조(초과근무), 제26조(육아휴직), 제34조(휴가기간 중의 휴일)을 아래같이 개정함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근무시간) (생략) <신설></p>	<p>제13조(근무시간) (생략) ④ "1주"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.</p>
<p>제15조(초과근무) ①~②(생략) <신설></p>	<p>제15조(초과근무) ①~②(생략) ③ 재단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. 다만 18세미만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18.11.00></p> <p>(③->④변경)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26조(육아휴직) ② 단,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중략)</p> <p>1.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(이하 "휴직개시예정일"이라 한다)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</p>	<p>제26조(육아휴직) ② 단,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중략)</p> <p>1.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(이하 "휴직개시예정일"이라 한다)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</p>
<p>제34조(휴가기간 중의 공휴일)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34조(휴가기간 중의 휴일)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

의안번호	제169호
의결연월일	2018. 11. 12

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

제안자	정책기획팀
제안년월일	2018. 11. 12

1. 의결주문

-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.

2. 제안이유

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 설치에 따른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
 - 근거 : 서울디자인재단 내 서울비엔날레 사무국 운영 협조요청 (도시공간개선단-9935, '18.8.16)

3. 주요골자

- 재단 내 비엔날레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,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 편성되었던 2018년 출연금 3억을 재단 사업계획 예산에 편성하고자 함
 - 세입·세출조정(안) : 54,451백만원 → 54,751백만원(300백만원 증액)

구 분		예 산	비 고
세입 조정	합 계	+300백만원	총 세입 545억 → 548억
	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출연금	+300백만원	
	2018년 출연금	+300백만원	· 출연금(300백만원)
세출 조정	합 계	+300백만원	총 세출 545억 → 548억
	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	+300백만원	
	2019년 행사 준비 관련 사무국 운영비용	+300백만원	· 비엔날레 사무국 운영(300백만원) -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용

※ 2018년 출연금 3억의 실 집행은 사무국 운영이 시작되는 2019년도로 이월되어 사용예정임

4. 참고사항

- 제안근거 :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 25조(의결사항),
2018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
- 절 차 : 이사회 의결 후 서울시장 승인
- 기 타 : 개정안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

[별첨1]

2018년 사업예산 변경내역(종합)

○ 2018년 세입 변경 내역

단위 : 천원

구 분	2018년 변경	2018년 기존	증감액
세입총계	54,751,044	54,451,044	300,000
영업수익	18,154,125	18,154,125	-
자체수입수익	18,154,125	18,154,125	-
DDP 운영수입	15,845,965	15,845,965	-
디자인문화상품판매수입	74,160	74,160	-
서울패션위크 운영수입	1,924,000	1,924,000	-
트레이드쇼 운영수입	260,000	260,000	-
디자인지원센터 운영수입	50,000	50,000	-
영업외수익	30,574,600	30,274,600	300,000
출연금 수익	30,186,000	30,186,000	-
디자인사업 출연금	7,771,800	7,771,800	-
패션봉제 출연금	14,045,000	14,045,000	-
일반관리비 출연금	8,369,200	8,369,200	-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금	300,000	-	300,000
기타수익	88,600	88,600	-
이자수익	88,600	88,600	-
기타수익	-	-	-
전기이월금	6,022,319	6,022,319	-
DDP 이월금	1,373,686	1,373,686	-
패션봉제 이월금	1,195,638	1,195,638	-
재단운영 이월금	3,452,994	3,452,994	-

○ 2018년 세출 변경 내역

단위 : 천원

구분	2018년 변경	2018년 기존	증감액
세출총계	54,751,044	54,451,044	300,000
재단운영	18,586,760	18,586,760	-
디자인생태계조성	6,521,960	6,521,960	-
디자인전시참가지원	200,000	200,000	-
디자인창조기업육성	420,000	420,000	-
서울디자인워크 개최	1,872,800	1,872,800	-
서울디자인컨설턴트운영	250,000	250,000	-
디자인공예문화산업활성화	2,032,160	2,032,160	-
도심공공안전안심디자인	250,000	250,000	-
동대문DDP디자인마켓	800,000	800,000	-
기업디자인역량강화지원사업	200,000	200,000	-
신진디자인이너육성사업	497,000	497,000	-
시민디자인사업	3,354,000	3,354,000	-
디자인교류	440,000	440,000	-
디자인홍보마케팅사업	410,000	410,000	-
시민디자인연구	904,000	904,000	-
디자인교육프로그램	500,000	500,000	-
유니버설디자인센터운영	800,000	800,000	-
디자인커뮤니티협력강화	300,000	300,000	-
일반관리비	8,710,800	8,710,800	-
인건비	5,437,188	5,437,188	-
운영경비	2,640,103	2,640,103	-
성과급	633,509	633,509	-
패션봉제사업	16,641,000	16,641,000	-
패션기반산업지원및지원시설운영	15,641,000	15,641,000	-
패션지원센터운영	3,474,000	3,474,000	-
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운영	475,500	475,500	-
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개최	150,000	150,000	-
봉제교육운영	300,000	300,000	-
동대문패션상권활성화지원	2,021,500	2,021,500	-
서울패션워크 개최	7,290,000	7,290,000	-
트레이드쇼개최	1,080,000	1,080,000	-
지속가능패션봉제허브운영	850,000	850,000	-
패션산업글로벌마케팅지원	1,000,000	1,000,000	-
글로벌패션브랜드육성지원	700,000	700,000	-
해외전시회참가지원	300,000	300,000	-
DDP	17,055,965	17,055,965	-
기반운영사업	17,055,965	17,055,965	-
시설안전안심운영관리	12,544,000	12,544,000	-
DDP정보화사업	960,000	960,000	-
DDP일반관리비	3,551,965	3,551,965	-
도시건축비엔날레	300,000	-	300,000
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	300,000	-	300,000
예비비	2,167,319	2,167,319	-
DDP예비비	163,687	163,687	-
패션봉제예비비	783,638	783,638	-
재단운영예비비	1,219,994	1,219,994	-

[별첨2]
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(변경 사업계획서)

1

예산(안) 설명

예산(안)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	분	2018예산(기존) (A)	2018예산(변경) (B)	예산구분	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출연금	자체수입		
계		-	300,000	300,000	-	300,000	100%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		-	300,000	300,000	-	300,000	100%

예산(안)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 목 구 분	2018년 예산(안)		증감사유
	기존	변경	
사무국 운영	-	사무국운영 : 300,000천원 ○ 인건비 운영 : 240,800천원(만원이하 절사) - 4급 (1명) 63,070천원 * 1명 = 63,070천원 - 5급 (1명) 49,441천원 * 1명 = 49,441천원 - 6급 (3명) 42,780천원 * 3명 = 128,340천원 ○ 사무국 운영 비용 : 45,300천원 - 사무국 운영 인력 4대보험, 소모품비, 복리후생비, 교육비, 기타 공공 요금 등 - 전체인건비 대비 18%책정 ○ 자문위원회 운영 : 5,250천원 - 자문수당 : 150천원 * 5인 * 5회 = 3,750천원 - 위원회 운영비 : 300천원 * 5회 = 1,500천원 ○ 해외 출장여비 : 8,650천원 - 유럽권 : 8,650천원 * 1명 = 8,650천원	

2

사업설명

사업목적

- 세계도시건축 정책의 중심지로서의 서울 도시건축 정체성 확립
- 세계 도시의 도시/건축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건축디자인 정책의 대안 제시
- 서울의 건축/디자인 정책에 대항 대외 홍보 및 국제교류 기회 마련

□ 사업근거

- 서울건축비엔날레 개최(시장요청사항)
-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5조 제2항 제8호
-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

□ 추진경위

- '14.07 : 민선6기 업무보고시 시장 요청 사항
- '15.06 : 서울디자인재단 직제 개편(건축비엔날레사무국 신설)
- '15.07 : 서울건축비엔날레사무국 설치 운영계획 수립
- '15.10 :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심포지엄 개최
- '15.12 :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
- '16.02 :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동총감독 선임
- '16.03 :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계획 수립
- '16.10 :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
- '17.01 :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세부추진계획 수립
- '17.9.2~11.5 :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
 - 전세계 50개 도시/120개 기관/40개 대학 참가
 - 일일평균 6,000명, 전체 관람객 46만여명 참가

□ 사업내용

- 위 치 : DDP, 서울도시건축박물관 및 돈의문박물관마을 등 도심 중요지역
- 사업기간 : '19.1.1~'19.12.31(제1회 행사개최 '17.9.1~'17.11.5/제2회 '19.9 개최 예정)
- 주 제 : 집합도시(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도시)
- 총감독 : 임재용(OCA건축사무사대표), 프란시스코 사닌(미국 시라스큐대 교수),

□ 2018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세부내용
계		300,000	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획, 홍보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	2018.01~2018.12	300,000	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시민참여 및 소통확대를 통한 도시 거버넌스 가치 실현
- 건축문화행사 다양화, 활성화를 통한 건축문화 저변 확대
- 글로벌 건축문화 도시서울로서의 위상 제고 및 도시경쟁력 강화

보고안건 보고

1	비상임이사 사임보고(박춘무 등)
2	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보고
3	내규개정 결과보고(3건)

1 서울디자인재단 비상임이사 사임 보고

○ 대상자 및 사임사유

성명	생년	임기	현직 및 경력	사임사유
박춘무	1954	'17.05.12 ~ '18.09.14(사임)	· 現 (주)데무 디자인실 감사	· 개인 일산상의 사유

○ 임원현황(변동 후) : 14명 => 13명(이사11명, 감사2명)

2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보고

○ 추진 경과

- 2018. 08. 08 :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
- 2018. 08. 14 : 임원추천위원 2명 이사회 추천 완료
- 2018. 10. 29 : 임원추천위원 3명 시의회 추천 완료
- 2018. 11. 02 : 임원추천위원회 2명 시장 추천 완료
- 2018. 11. 08 :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
- 2018. 11. 13~27 :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(재단 및 서울시 홈페이지, 일간지)

○ 선임 대상

- 비상임이사 3명 : 고미석('18.3.30임기만료)
박춘무('18.9.14 사임)
방은진('18.10.26 사임표명 / '18.12.31 사임예정)

○ 향후 계획

- 12. 04 :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(비상임이사 후보자 2배수 서울시 추천)
- 12~1월 : 비상임이사 서울시장 임명

3 서울디자인재단 내규 개정 건

안 건	주 요 내 용 / 변경사유	근거
1. 업무분장 내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개정 	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
2. 인사규정 시행내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7조) 인사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항 구체화 • (제24조의 2)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 명확화 • (제24조의 3)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승진대상자 선정표 신설 ⇒ 대표이사 방침으로 운영되던 승진절차를 내규로 명문화 	지방공무원 징계 규정 및 지방공무원징계규칙 개정알림 (감사담당관-12850, 2018.04.12.) 2018년도 서울디자인재단 승진 운영계획 (대표이사방침 제962호, 2018.10.09.)
3. 비상용직 관리내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4조) 고용 및 자격 - 비상용직 채용을 특별채용에서 공개채용으로 하여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정 	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개정사항(2018.9.5)